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46 호  
2018년3월9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605호 2018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안내) /3
- 여수시 공고 제2018-621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 송달 공고 /19

회 관									
--------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2018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공고

### 1. 사업비 및 사업물량

- 사업비/사업량 : 금 1,021,250천원 / 사업량 : 15~20척(예산범위내)

###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공고기간 : 2018. 3. 9.(금) ~ 3. 25.(일)
- 신청기간 : 2018. 3. 26.(월) ~ 4. 6.(금)
  - 신청마감 일시 : 2018. 4. 6.(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선관리팀(담당 : 임지현 061-659-3923)

### 3. 사업대상 업종 및 우선순위

#### 가. 대상업종 : 연안어업 전 업종

- ※ 연안복합, 통발, 자망, 선망, 들망, 개량안강망, 조망, 선인망, 새우조망(이동성 구획어업)

#### 나. 우선순위

-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2) 규모가 큰 어선
- 3) 폐업지원금 지원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 신청 어업자
-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 5)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없는 어선
- 6) 어선 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신청방법

-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2)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3) 어선원부 1부
- 4) 선체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
- 5) 어선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 1부.(해양경비안전서의 출입항신고소나 파출소 확인을 받은 자료에 한함)  
※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감척목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6) 면세유 구입실적 1부(해당 수협장 확인 요함)
- 7) 수협 위판실적 및 기타 판매확인 서류 1부
- 8)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1)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 계속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자도 신청가능
- 2)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 4)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 5)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일일 조업산출 기준 2시간 이상으로 함)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 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여수시장이 지역실정을 감안 조업실적 산출(경유 2.5시간, 가솔린 1시간 기준으로 함)
  -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여수시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 (1)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6)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 7)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유효한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 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가) 사업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2년간 조업실적이 90일 미만인 자
- 나)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 다) 어선감척 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바)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 사)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 2)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 다. 선령

- o 사업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 6.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

- 가.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나.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7. 불이행시 제재조치

- 가. 어선감척 대상자는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8.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 9.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가.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나. 이번 신청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금액이며,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개별 평가합니다.

## 10. 어선감척 절차

### ①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여수시)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 ②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여수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③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여수시장→ 신청자)

⇒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선정 통지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④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여수시장)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평가

⇒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기초가격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⑥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여수시장)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제출(규칙 별지 5,6호서식)

## 11. 기타

가. 사업 신청자는 신청안내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수산경영과(☎ 임지현 659-392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부.

위와 같이 연안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018. 3. 9.

여 수 시 장 

(붙임 1)

##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 1. (목 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수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 ①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 ① 여수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2) 규모가 큰 어선
-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 5)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6)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여수시장이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장이 정한다.
-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장·군수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8.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9.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여수시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여수시장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이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	-----	------------------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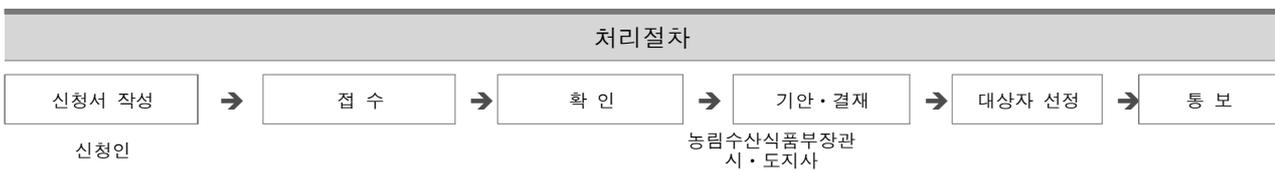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input type="checkbox"/>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input type="checkbox"/>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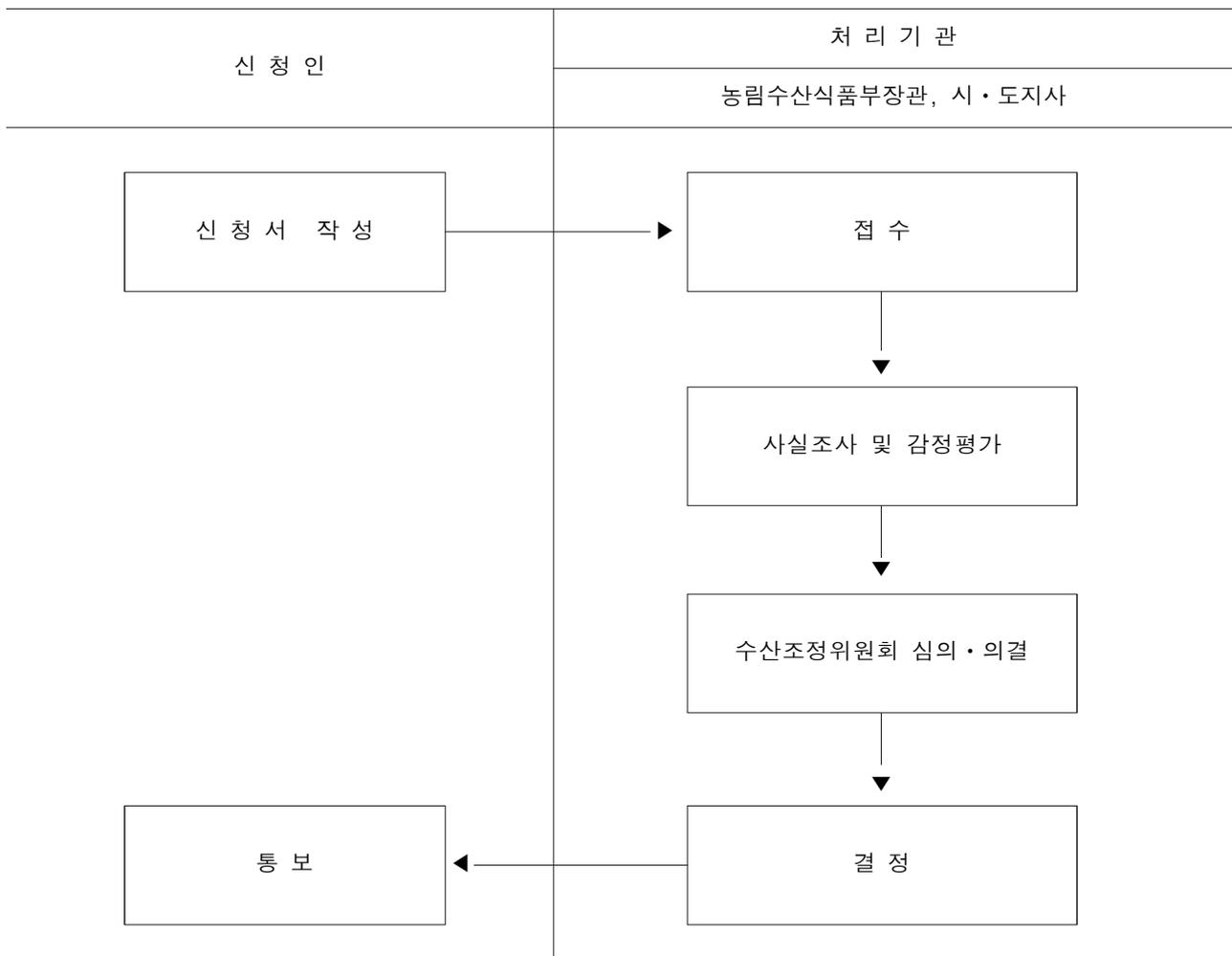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 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8. 3. 9.

###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3. 9. ~ 2018. 03. 26일까지
3. 공고장소 : 시 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송달하고자 하는 과태료 처분 내용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처분사유	처분명	처분근거
단란주점	지중해 (제1998-0506035)	여수시 여문문화길 46(문수동)	홍★식	2017년 단란주점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미이수	과태료 20만원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01조

#### 5. 고지사항

위 당사자는 2018.3.31일까지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납부 가능).

아울러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여수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후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될 경우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가중처분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김행아 ☎(061) 659-4233